

공익신고제도



(국민의 건강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제도)

신고 주체

누구든지(내부 직원이나 관계자로 한정되지 않습니다)

신고 대상

- 의료인, 의료기관 종사자, 약사 등에게 리베이트 제공
- 허가품목 외 의약품 제조·수입
- 무자격기관에서 임상시험 실시
- 의약품 제조시설의 비위생적 관리 및 유해물질 방출 등

☞ 「의료법」, 「약사법」 등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에서 정하고 있는 279개 법률의 위반행위

신고 기관

- 국민권익위원회
- 수사기관
- 관할 행정·감독기관(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 등)
- 공사 등 공공단체
- 기업의 대표자·사용자 등

신고 방법

인터넷창에 **‘청렴신문고’** 입력

신고자 보호

- 비밀보장
- 불이익조치 금지
- 신변보호
- 책임감면

신고 보상금

- 보상 : 20억원 한도에서 벌금·과징금 등의 최대 20%(내부신고자에 한함)
- 포상 : 공익증진에 크게 기여한 경우 등 최대 2억원

문의처

- 국민권익위원회(www.acrc.go.kr) ⇒ 부패·공익신고 ⇒ 공익신고 상담
- 국번 없이 **110** 또는 **1398**
- 공익신고자 보호법, 신고사건 처리 : **044-200-7752~7761**
- 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 : **044-200-7772~7779**

공익신고자 보호·보상제도

- **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신분비밀을 보장합니다.**

- 비밀보장 의무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
- 주의·감독을 게을리한 사업주도 처벌

- **공익신고자와 협조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금지됩니다.**

- 공익신고·협조를 이유로 신분상(해고 등)·인사상(징계 등)·경제적(계약해지 등) 불이익과 정신적·신체적 손상(집단 따돌림·폭행 등)을 받지 않습니다.
- 불이익조치를 받을 우려가 있거나 받은 경우, 국민권익위원회에 보호조치 신청을 할 수 있으며,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권익위의 보호조치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.
- 이를 위반할 경우,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- **공익신고자와 협조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감면이 가능합니다.**

- 공익신고로 신고자·협조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, 형벌·징계·행정처분이 감경·면제될 수 있으며, 직무상 비밀준수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.

- **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**

- 신고자·협조자와 그 친족·동거인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

- **공익신고자에게 구조금을 지급합니다.**

- 공익신고 등으로 치료, 이사, 쟁송, 임금손실 등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- **내부공익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**

- 공익신고로 국가 수입이 회복·증대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합니다.(최대 20억원)

